

긴급복지지원사업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선지원, 후조사로 시기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		
사업비 (당해년도)	26,794,500천원	(국비)17,863,000천원	(시비)8,931,500천원
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	(기타)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복지정책실	지역돌봄복지과	하영태 2133-7370	임하정 2133-7379	남광미 2133-7393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19예산액 (A)	2020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18,452,000) 27,678,000	(x17,863,000) 26,794,500	(x△589,000) △883,500	(x△3) △3
자치단체경상보조금	(x18,452,000) 27,678,000	(x17,863,000) 26,794,500	(x△589,000) △883,500	(x△3) △3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0년 예산내역		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긴급복지지원사업	=	26,794,500천원

과목구분	2020년 예산내역
	26,794,500,000원

3 사업 설명

사업목적

- 기존의 신청주의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수급자 전락 예방 및 자립(자활) 지원

사업근거

- 긴급복지지원법

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0. 1 ~ 12월
- 지원대상 : 주소득자 사망, 중병,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
- 지원기준 :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, 재산 188백만원이하(금융재산 5백만원)
- 지원내용 : 위기상황별 맞춤형 지원(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 등)
- 재원분담율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- 총사업비 : 26,794,500천원

추진경위

- '05.12.23. : 긴급복지지원법 제정
- '15.12.~ :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

2020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26,794,500	
기본계획 수립	2020.01~2020.12		
보조금 신청 및 집행	2020.01~2020.12	26,794,500	자치구 보조금 월별 신청 및 교부
보조금 집행 정산	2021.01~2021.02		보조금 정산

4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7년도	○ 38,230가구, 26,865백만원 지원
2018년도	○ 36,997가구, 26,589백만원 지원
2019년도	○ 34,121가구, 25,361백만원 지원('19년 9월말 기준)

□ 향후 기대효과

-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해소 및 안정적 생활로의 복귀 지원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6	(x11,705,000) 17,557,500	(x-) 0	(x-) 0	(x11,705,000) 17,557,500	(x11,705,000) 17,557,500	(x-) 0	(x-) 0
2017	(x13,700,000) 20,550,000	(x-) 0	(x-) 0	(x13,700,000) 20,550,000	(x13,700,000) 20,550,000	(x-) 0	(x-) 0
2018	(x14,324,000) 20,103,000	(x-) 0	(x-) 1,383,000	(x14,324,000) 21,486,000	(x14,324,000) 21,486,000	(x-) 0	(x-) 0